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10년국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채권-파생형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[채권-파생형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1.19 -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삼성증권, 케이비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 12. 20	제36조 (운용 제한)	①. 나.<생략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	① 나.<생략>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

2012. 12. 20	제40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 <p>2. 집합투자업자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</p> <p>2.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</p> <p>3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</p> <p>4.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</p>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	--

		한다.	하여 투자신 탁의 원본액 이 50 억원 미만인 경 우. 다만, 존속하는 동 안 추가로 설정(모집) 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
		추 가	
		추 가	②투자신탁 을 설정한 집합투자업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 탁을 해지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 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 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 다.
		②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신탁 계약의 해 지일(이하 “해지기준 일”이라 한다)로부 터 1 월 전 에 당해 신탁 계약의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 지관련사항 을 증권시 장에 공시 하고 제 48 조의 규정 에 따라 공 고하여야 한다.	1. 신탁계약 에서 정한 신탁계약기 간의 종료 2. 수익자총 회의 투자신 탁 해지 결 의 3. 투자신탁 의 피흡수합 병 4. 투자신탁 의 등록 취 소 5. 이 투자 신탁 수익증 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 우. 이 경우 집합투자업
		추 가	

			자는 상장폐 지일로부터 10 일 이내 에 이 신탁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 다.
			③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해지사 유, 해지일 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 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 항을 집합투 자업자의 인 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 용하여 공시 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제 2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 여 이 투자 신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신탁 계약의 해 지일로부터 1 월 전에 당해 신탁계 약의 해지사 유, 해지일 자,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 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 거래소에 공 시하고 제 48 조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
2012. 12. 20	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말일의 영업일	① 생략 1. 지급기준일: 회계기간 종료일.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
2012. 12. 20	제48조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	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	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)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,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사항없음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